

경력개발센터 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졸업생 및 재학생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, 기타 취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대학 경력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2. 9., 2015. 3. 1., 2017.11.21.>

제2조(명칭)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경력개발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<개정 2012. 2. 9., 2015. 3. 1.>

제3조(위치) 본 센터는 본대학 내에 둔다

제4조(기능)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취업-창업 및 역량·경력개발에 관한 인식확산, 정보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및 취업통계 등 조사에 관한 사항
3. 진로·진학 관련 진로 검사·상담 및 경력개발·취업 상담에 관한 사항
4.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 관련 시스템 운용
5. 취업-진로-창업 관련 교과목(수업) 진행
6. 진로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
7. 경력개발·취업지도 교수 운영
8. 취업-창업 동아리 발굴 및 육성
9.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
10. 학생모니터링단 운영
11. 국내·외 인턴실습 지원
12. 기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5. 3. 1., 2017.11.21.]

제2장 조직

제5조(소장) 본 센터에 소장을 둔다.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9.>

제6조(직원 등) ① 본 센터에는 사무직원, 조교 및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으며,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 <개정 2017.11.21.>

② 본 센터에는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취업지원관(직업상담사)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 <신설 2017.11.21.>

제7조(산학협력중점교수) ① 본 센터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산학협력

중점교수는 총장이 임명하고,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업처 발굴 및 조사
2. 국내·외 취업 및 진학 관련 진로 상담
3. 국내·외 취업 지원을 위한 온·오프라인 상의 구인·구직 연계
4. 진로·취업 특강, 스터디 그룹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
5. 취업동아리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8조(외부전문가) ① 본 센터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외부전문가는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9조(학생모니터링단) ① 본 센터의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관한 학생의견 수렴,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.

② 학생모니터링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서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, 본 센터에서 총괄·관리한다.

③ 학생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센터 내 학생지원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2. 센터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3. 기타 교육과 관련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
④ 본 센터는 학생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10조(경력개발·취업지도교수) 본 센터에는 학과별 경력개발·취업지도교수를 둔다. 경력개발·취업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학과 재학·휴학생의 진로 및 취업상담
2. 학과 비교과프로그램 계획 및 협의
3. 재학생 입사서류 ‘진로 및 심리상담 종합시스템’ 업로드
4. 센터의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독려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학생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 구성)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, 학생 진로 탐색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학생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11.21.]

제12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본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<2015.3.1., 2017.11.21.>

1.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센터의 기본 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3조(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본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14조(감사) 본 센터의 감사는 본 대학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취업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